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파견법 시행규칙)



[시행 2024. 6. 12.] [고용노동부령 제416호, 2024. 6. 12., 타법개정]

고용노동부 (고용차별개선과) 044-202-7569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6. 29., 2019. 11. 12.>
- 제2조(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·연구) ①고용노동부장관은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·연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6. 29,, 2009. 3. 10,, 2010. 7. 12,, 2019. 11. 12.>
 - 1.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
 - 2.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
 - 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
 -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·사용자대표·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, 근로자대표 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.<개정 2019. 11. 12.>
- 제3조(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)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 용노동관서의 장(이하 "허가관청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 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. <개정 2006. 3. 2., 2006. 7. 19., 2007. 6. 29., 2010. 7.
 - 12., 2019. 11. 12.>
 - 1.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
 - 2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3.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4.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
 - 5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,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「재외공관 공증법」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
 -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<신설 2006. 7. 19., 2007. 6. 29., 2009. 3. 10., 2012. 8. 2., 2019. 11. 12.>
 -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2.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(이하 "허가증"이라 한다)을 발급하고,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.<개정 2019. 11. 12.>
 -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파견사업주"라 한다)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4. 12. 31., 2019. 11. 12.>
- **제3조의2(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)**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(사람에 한정한다)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,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,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(기본증명서를 말한다)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1. 12.]

- 제4조(허가사항의 변경)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2.>
 - 1. 사업소 수의 증가 : 다음 각 목의 서류
 - 가.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
 - 나.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
 - 2. 사업소의 위치변경: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
 - 3. 사업주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)의 변경: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(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07, 6, 29,, 2019, 11, 12.>
 - 1. 법인의 임원(대표자는 제외한다)의 변경: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(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2.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(이하 "파견사업관리책임자"라 한다)의 변경: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(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3.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: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4. 사업소 수의 감소 : 관계서류 없음
 - ③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,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.<개정 2019. 11. 12.>
- 제5조(허가의 갱신)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6. 7, 19,, 2019. 11, 12.>
 - 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2. 삭제 < 2006. 7. 19.>
 - 3. 허가증 사본
 - 4. 신청인(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)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
 -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<신설 2006. 7. 19., 2007. 6. 29., 2009. 3. 10., 2012. 8. 2., 2019. 11. 12.>
 - 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2. 사업자등록증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③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,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.<개정 2006. 7. 19., 2019. 11. 12.>
- 제6조(폐지신고)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2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.<개정 2019. 11. 12.>
- 제7조(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)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9. 11. 12.>
- 제8조(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)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2.>
 - 1.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
 - 2.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
- **제9조(사업보고)**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07. 6. 29., 2019. 11. 12.>
- **제10조(증표)**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9, 11, 12,>
 -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「근로감독관증 규칙」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<신설 2019, 11, 12.>
- 제11조(계약서의 작성등)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,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6. 29, 2019. 11. 12.>
 - ②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(이하 "사용사업관리책임자"라 한다)의 성명·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.<개정 2007. 6. 29., 2010. 7. 12., 2019. 11. 12.>
- **제12조(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)** 법 제26조제1항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7. 6. 29., 2010. 7. 12., 2019. 11. 12.>
- 제13조(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)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(이하 "사용사업주"라 한다)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, 성별, 연령, 학력, 자격,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19, 11, 12.>
- 제14조(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·임무)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이상 선임해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2.>
 -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9. 11. 12.>
 - 1. 법 제24조,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
 - 2.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
 - 3.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
- 제15조(파견사업관리대장)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・보존해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2.>
 -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9. 11. 12.>
 - 1. 파견근로자의 성명
 - 2.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
 - 3.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
- 5.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
- ③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.<개정 2019. 11. 12.>
- 제16조(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·임무)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이상 선임해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2.>
 -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9. 11. 12.>
 - 1. 파견근로자를 지휘・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
 - 2.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
 - 3.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
- 제17조(사용사업관리대장)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・보존해야 한다.

<개정 2019. 11. 12.>

-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9. 11. 12.>
- 1. 파견근로자의 성명
- 2.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
- 3.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
- 4.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
-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.<개정 2019. 11. 12.>
- 제18조(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) 법 제35조제4항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"이란 「산업안 전보건법」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 [전문개정 2019. 11. 12.]

제19조(보고명령)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. <개정 2019. 11. 12.>

제20조(수수료)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.

<개정 2024. 6. 12.>

- 1. 신규허가: 3만원
- 2. 변경허가: 2만원
- 3. 갱신허가: 1만원

[전문개정 2009. 5. 12.]

제21조 삭제 <2019. 12. 23.>

부칙 <제416호,2024. 6. 12.>(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